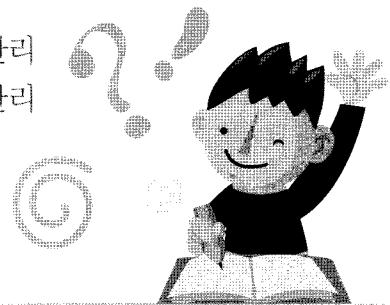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대기배출시설 임대 가능여부는?

본사업장에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제재시설, 연마시설)과 도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배출시설 4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본사업장을 동일 부지내에서 2개의 사업체에 배출시설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1개의 업체에는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을 1개의 업체에는 도장시설을 임대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라 배출시설 전체를 하나의 단위공정으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할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신고필증에 B사와 C사의 임대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기본부과금 자료제출 등 사업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관련한 질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보면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지정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월평균 배출량을 신고 한 사업장폐기물의 전체량을 말하는 것인지, 종류

별 배출량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처리계획 확인변경 대상이 맞는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월 평균 배출량’은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이 아닌 폐기물 전체 평균 배출량을 의미하며, 제18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월 평균 배출량’은 제18조의 제1항 각 호별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전년도 1년간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는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이며, 처리계획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이 동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별로 전년도 1년간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Q 수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중 궁금한 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중에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된 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이 면제된 이화학 시험시설(발생한 폐수는 위탁처리)과 세척시설(발생한 폐수는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이 있는데요.

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세척시설은 기준에 작성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지 18호에 추가하여 작성하려고 하고 위탁 처리하는 이화학 시험시설은 기준 작성하는 일지에는 추가하지 않고 별지 20호의 양식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작성함에 있어 일지작성에 문제가 있을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Q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 33조 제2호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0호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위의 규정에 준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맞는 운영일지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Q 건설관련 수성·유성용제에 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규제는?

국내에 건설관련 수성, 유성용제(페인트, 접착제, 방수제, 코팅제)에 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규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자료 부탁 드립니다. 혹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A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하는 도료(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에 대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 규칙 별표9에 따라 건축용 도로는 콘크리트 · 시멘트 · 물탈용, 일반철재용, 일반목재용, 방수바닥재류, 가정용도로, 특수기능 도로 등 용도별로 함유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동주택 단지내 온수공급시설의 수도법 적용 여부는?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급수(냉수)를 공급받아 단지 내 열원장치로 가열하여 온수를 생산, 각 세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지내에서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장비, 배관 등)도 수도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 합니다.(예, 수도법 시행령 53조에 언급되어 있는 역류방지밸브를 온수미터기 후단에 설치해야 하는지? 등)

A 수도는 관로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은 수돗물을

온수로 재가공하는 시설 등은 수도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역류방지밸브의 설치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임을 알려 드립니다.

Q 공동명의에서 한명으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수시 토양오염도 검사는?

A, B 두사람 명의로 특정 토양오염 대상시설 신고를 득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양도양수관계로 소유권은 B에게 이전되었으며,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설치자 역시 A, B 공동 운영에서 B 단독운영으로 변경예정입니다. 이때 소유권 변경에 따른 수시토양오염도 검사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A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B는 공동명의로 특정 토양오염 대상 시설 신고시 이미 검사를 받았으므로 명의변경으로 인한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